

## 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(주관:행정안전부)
- 사업내용 :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
- 사업대상 : 충청남도 내 청년(19~39세) 중 미취업자 134명
- 근무기간 : 2026년 7월~11월(5개월)
- 직무내용 : 참여기업 직무내용 참조
  - ①홍보·마케팅·영상·디자인, ②AI기반 데이터 분석·관리, ③상담·교육·복지서비스,
  - ④문화·예술·공연·전시 기획·지원, ⑤에너지·안전·기술진단, ⑥사무행정·회계·경영지원 등

## 2 모집개요

- 신청기간 : 2026. 6. 22.(월)~6. 25.(금) 20시까지(예정)
- 모집대상 : 충청남도 내 청년(19~39세) 중 미취업자
- 모집규모 : 청년 134명(\*시군 참여 및 참여기업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)
- 연령 : 2026.1.1.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(1986.1.2.~2007.1.1. 출생자)
  - \*참여 신청일 기준, 미취업자(4대보험 미가입자)
  - \*사업 참여기간 동안 충청남도 거주자
- 모집절차 : 참여청년 접수 종료 후 참여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운영기관 주관하에 참여기업이 참여청년을 면접하여 최종 선발함

### 참여제한

- (참여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불가
  - ①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
    - ※ 단,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참여 가능(증빙제출 필요)
    - ※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사실증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하거나, 소득금액증명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,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
  - ②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관련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
  - ③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
  - ④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(대표자)인 자
  -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자
  - ⑥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
  -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
- 참여제한 사유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, 사업 참여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참여 중단할 수 있음

○ 근로조건

- (근로시간) 주 5일(주 40시간), 1일 8시간(09:00~18:00)
- (휴게시간) 12:00~13:00(1시간)
- (연장근로시간) 주 12시간 이내(참여기업-참여청년 합의 필요)

※ 연장·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(상세한 내용은 7. 기타 참조)

○ 임금

- (시급) 11,188원
- ※ 월 209시간 개근시 2,338,292원(주 40시간 기준, 유급주휴 포함, 세전)
- (시간외 근무수당)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임금의 50/100 가산 지급
- (급여공제)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, 국민연금, 건강보험(장기요양보험 포함),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제 항목

### 3 신청개요

○ 신청유형

- ① **취업형** 인턴 :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,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실무 중심 일경험
- ② **일자리창조형** 인턴 :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일경험으로, 참여청년을 팀 단위(2~4명)로 기업과 매칭

○ 신청방법 :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

○ 사전알림 신청 : <https://forms.gle/ib2WRoNJhagLPXJ6A>

\*구글링크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추후 참가기업 소개와 고용24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.

○ 제출서류

NO	제출 서류	서식	필수
1	참여청년 신청서	서식1	
2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서식2	
3	참여청년 서약서	서식3	

○ 참여기업 및 직무내용

\* 참여기업 선정 후 안내 예정

## 4 선발방법

- 심사방법 : 참여자 적격 여부 검토
  - 면접대상 알림 :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적격여부 검토 후 모집결과를 기업에 통보
  - 참여청년과 참여기업이 면접을 진행하며, 참여기업이 선발함
  - 면접: 청년은 희망기업 3개사와 면접을 진행할 수 있으며, 참여기업은 최대 3배수까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비 후보를 선발할 수 있음(면접시간 10분 내외)
  - 매칭: 참여기업이 심사한 결과를 청년에게 알리고, 참여기업에 합격한 청년이 최종 수락하면 참여청년과 참여기업의 매칭이 완료됨
- ※ 참여청년 선발이후 선발인원 미달 혹은 중도 탈락자 발생 시 수시 모집 공고 예정

## 5 직무교육

- 직무교육 : 최종 선발된 참여청년 대상 직무교육 진행(총 20시간)
  - 교육기관이 기획하여 설계한 커리큘럼에 따라 기본·심화과정 이수
  - 총 교육시간의 90% 이상을 수강해야 수료되며, 미수료시 참여 불가
  - 커리큘럼 :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설계
  - 교육은 온·오프라인으로 진행 예정
- (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참여) 주 1회 이상 청년매니저와 정기면담(대면·유선·온라인 등) 필수 참여
- 오리엔테이션 및 1차 교육 일정
  - 일정: 2026. 7. 13.(월) 오후 1시 30분
  - 장소: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

(\*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자세히 안내 예정)

○ 교육내용

구분	교육내용	시간	비고
기초	<b>[사회연대경제와 지역혁신의 이해]</b> • 사회연대경제의 철학과 가치 • 충남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탐색 (충남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·마을기업 사례 분석)	4	
	<b>[청년 일경험 우수사례 토크콘서트]</b> • 선배 참여자 경험 공유 • 실패와 성장의 실제 이야기 • 현장 노하우 및 네트워킹	2	
	<b>[사회연대경제 우수지역탐방 및 나의 커리어 디자인 워크숍]</b> •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방문 및 라운딩 • 강점 진단 및 역량 분석 • 커리어 설계 및 성장 목표 수립	2	
	<b>[나의 성장 스토리 발표]</b> • 경험 성찰 및 성과 정리 • 포트폴리오 발표 • 성장 로드맵 수립	2	성과공유회 11월 예정
심화	<b>[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모델 이해]</b> • 창업에서 성장까지의 발전 경로 •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의 균형	10	
	<b>[사회연대경제 노동인권과 건강한 일터 만들기]</b> • 노동권의 이해 • 차별 예방과 인권 감수성 •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		
	<b>[사회연대경제 조직문화와 협업 역량]</b> • 효과적인 소통 방법 • 회의 및 협업 스킬 • 문제해결과 갈등관리		
	<b>[사회적 가치 마케팅 실전]</b> • 스토리텔링 마케팅 및 실전 오픈마켓 입점/운영 • SNS 및 콘텐츠 기획 • 지역 기반 브랜딩 전략		
	<b>[AI 리터러시와 디지털 업무혁신]</b> • 생성형 AI의 이해 • ChatGPT, Gemini, Claude 활용법 • AI 업무자동화 프로젝트		
합계		20	

## 6 문의

### □ 북부권 [천안, 아산, 서산, 당진, 예산, 태안 지역]

-문의 이메일 : asanymca2026@naver.com

-문의 **아산YMCA** : 041-546-9877

### □ 남부권 [공주, 보령, 논산, 계룡, 금산, 부여, 서천, 청양, 홍성 지역]

-문의 이메일 : cncse2604@naver.com

-문의 **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** : 041-408-7000

## 7 기타

### 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심사 및 선발 등에 관련한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
-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-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선정 취소, 지원 중단,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### □ 청년 지원 프로그램

- (프로그램 지원)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과 참여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
  -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: 참여청년의 원활한 일경험을 위하여 운영기관이 참여청년에게 고충상담, 상시 상담창구 운영, 사업 안내 등을 지원함
  - 멘토링 프로그램 :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해, 참여청년과 같은 부서에 있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참여기업의 직원을 멘토로 정하여 멘토링을 지원함

### □ 법적 지위와 4대보험 가입 의무

- (법적 지위) 참여청년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'근로자'에 해당
- (4대보험)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 대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함

## □ 연장근로와 근로조건 변경

- (연장근로) 연장근로시간은 참여청년의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 이내로 함
  - 연장·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,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합의가 이뤄진 때에만 참여기업의 긴급한 필요가 있고 참여청년과 합의하면 실시 가능
  - 휴일·연장·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참여청년과 합의를 통해 주말 운영 및 시간조정(08:00~19:00 범위) 가능
  - 기업과 청년의 합의로 위 운영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는 기업이 부담함
- (근로계약 변경) 참여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「근로기준법」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,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\*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여청년에게 교부 (\*임금(구성항목, 계산방법, 지급방법)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유급휴가)
- (근로조건 변경 불가)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기준이며, 참여청년과 협의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참여청년에게 불리하게 변경 불가
- (청년이 근로를 종료하고 싶을 경우) 참여청년이 근로를 종료하고 싶으면 퇴사일로부터 10일 전에 참여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함  
(\*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 사직서 제출 없이 그 만료일로 퇴직)

## □ 근태관리

- (출근인정) 천재지변, 유행성 질병·감염병 등 특수상황 발생 시 운영기관이 문서로 인정하면 출근한 것으로 인정 가능
  - 단,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가 사용이라도 전체 일경험 기간의 아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(\*8주 이내: 10%, 8주 초과~12주: 15%, 12주 초과: 20%)
- (결근)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결근 예정일 전날까지 참여기업에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
  - 사후승인: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결근 당일 업무종료 전까지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리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
  - 무단결근: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
- (지각·조퇴·외출) 지각·조퇴·외출하고자 하는 경우 당일 출근 시간까지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,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바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함  
(\*지각·조퇴·외출 누계 시간이 8시간일 경우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)

## □ 휴일과 휴가

○ (휴일)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름

- ① (주휴일)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 보장
- ② (공휴일) 공휴일(일요일 제외)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 적용

\*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며, 휴무일 또는 비번일과 겹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급 적용

③ (휴일대체)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다른 근로일로 대체 가능

- 이 경우 참여기업과 참여청년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며, 휴일대체 사실은 최소 24시간 전에 알려야 함

○ (연차유급휴가)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

\* 단,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발생

- 연차유급휴가는 반일 또는 1시간 단위(지각·조퇴·외출)로 사용 가능

\* 8시간=1일로 계산, 일경험 기간 내 연차 미사용 시 근무종료 후 연차수당 지급

○ (경조사 휴가) 경조사 유급휴가의 내용과 휴가일수는 아래 표 확인

구분	휴가일수	대상
결혼	5일	본인
	1일	자녀, 형제·자매 결혼
사망	5일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 부모
	3일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
	3일	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
	1일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
출산	10일	본인 및 배우자

○ (병가)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유급 병가, 업무 외 부상·질병인 경우 15일의 무급 병가 부여

-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, 7일 이상 연속 사용 또는 연간 누계 6일 초과 시 「의료법」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제출

※ 종일·반일·1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, 8시간을 1일로 산정

○ (특별휴가) 취업시험, 면접, 자격증 시험 응시 시 특별휴가(유급) 부여

- 수험표 등 응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때에만 시험 당일 부여하며, 1개월마다 1일 이내 사용 가능

※ 자격증 시험은 합격·불합격으로 결과가 통보되는 시험만 적용(어학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미적용)

○ (재해에 따른 휴가) 풍수해,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참여청년 본인이 손해를 입으면 최대 5일의 유급휴가 부여

## □ 공가

- (공가) 법령상 의무 이행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요한 기간 동안 부여(유급)

### 공가사유

1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판정검사, 소집, 동원 또는 훈련에 응하는 경우
2. 공무와 관련하여 법원, 검찰, 경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
3.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
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건강진단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검진, 「결핵예방법」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는 경우
5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 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
6. 천재지변, 교통 차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